광주 방림 광신프로그레스 입주자모집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 31383호 (2011. 9. 30.)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청약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11항"의 규정에 의거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및 전자공인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 3순위 인터넷 접수 서비스 실시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3순위에 해당하는(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분들에게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2011년 9월 1일부터 운영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07.9.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하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2009. 4.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전매가능 및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나 분양권 전매는 가능합니다.
  · 재당첨제한기간 : 전용면적 85㎡이하 ~ 3년, 전용면적 85㎡초과 ~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과거 분양가상한제 재당첨제한 기간내 있는 자가 2009.04.01~ 2012.03.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함.

■ 투기적발자 처벌 안내(주택법 제96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62-18 외 48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14~15층, 4개동 2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 총 258세대(일반특별공급 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세대,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세대 총 59세대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2항에 의한 무주택세대주 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74.7911㎡ 8세대, 84.8130㎡ 15세대, 84.8770㎡ 1세대 총 24세대(10%이내)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6항에 의한 무주택세대주 다자녀특별공급 74.7911㎡ 4세대, 84.8130㎡ 7세대 총 11세대(5%이내)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7항에 의한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74.7911㎡ 8세대, 84.8130㎡ 15세대, 84.8770㎡ 1세대 총 24세대(10%이내)

(단위:㎡,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공급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공용	세대별 공급면적 소계	그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최고층수	동, 라인구분
민영주택	2011000918-01	84.8130	156	84.8130	23.4063	108.2193	31.1984	139.4177	49.9248	15	
	2011000918-02	84.8770	14	84.8770	23.4268	108.3038	31.2219	139.5257	49.9625	14	
	2011000918-03	74.7911	88	74.7911	20.9938	95.7849	27.5118	123.2967	44.0255	1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주택형(㎡)	층별	공급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계약시(5%)	중도금 1차(10%) 2012.01.28	2차(10%) 2012.03.28	3차(10%) 2012.05.28	4차(10%) 2012.07.28	5차(10%) 2012.09.28	6차(10%) 2012.11.28	잔금(35%) 입주시
84.8130 A	1	11	60,786,000	147,374,000	208,160,000	10,408,000	20,816,000	20,816,000	20,816,000	20,816,000	20,816,000	20,816,000	72,856,000
	2	11	60,786,000	154,374,000	215,160,000	10,758,000	21,516,000	21,516,000	21,516,000	21,516,000	21,516,000	21,516,000	75,306,000
	3	11	60,786,000	160,374,000	221,160,000	11,058,000	22,116,000	22,116,000	22,116,000	22,116,000	22,116,000	22,116,000	77,406,000
	기준층	112	60,786,000	165,374,000	226,160,000	11,308,000	22,616,000	22,616,000	22,616,000	22,616,000	22,616,000	22,616,000	79,156,000
	최상층	11	60,786,000	192,504,000	253,290,000	12,664,500	25,329,000	25,329,000	25,329,000	25,329,000	25,329,000	25,329,000	88,651,500
84.8770 B	1	1	60,831,000	147,539,000	208,370,000	10,418,500	20,837,000	20,837,000	20,837,000	20,837,000	20,837,000	20,837,000	72,929,500
	2	1	60,831,000	154,539,000	215,370,000	10,768,500	21,537,000	21,537,000	21,537,000	21,537,000	21,537,000	21,537,000	75,379,500
	3	1	60,831,000	160,539,000	221,370,000	11,068,500	22,137,000	22,137,000	22,137,000	22,137,000	22,137,000	22,137,000	77,479,500
	기준층	10	60,831,000	165,539,000	226,370,000	11,318,500	22,637,000	22,637,000	22,637,000	22,637,000	22,637,000	22,637,000	79,229,500
	최상층	1	60,831,000	192,699,000	253,530,000	12,676,500	25,353,000	25,353,000	25,353,000	25,353,000	25,353,000	25,353,000	88,735,500
74.7911 C	1	6	53,603,000	130,577,000	184,180,000	9,209,000	18,418,000	18,418,000	18,418,000	18,418,000	18,418,000	18,418,000	64,463,000
	2	6	53,603,000	136,577,000	190,180,000	9,509,000	19,018,000	19,018,000	19,018,000	19,018,000	19,018,000	19,018,000	66,563,000
	3	6	53,603,000	141,577,000	195,180,000	9,759,000	19,518,000	19,518,000	19,518,000	19,518,000	19,518,000	19,518,000	68,313,000
	기준층	64	53,603,000	146,577,000	200,180,000	10,009,000	20,018,000	20,018,000	20,018,000	20,018,000	20,018,000	20,018,000	70,063,000
	최상층	6	53,603,000	170,597,000	224,200,000	11,210,000	22,420,000	22,420,000	22,420,000	22,420,000	22,420,000	22,420,000	78,470,000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의 면적이며,그밖의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계약자 별도 계약 품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 · 기계실, 경비실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 · 기계실, 경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함.(이때,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까지로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되어 있으니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당사 대출알선으로 납부할 경우 대출시 발생하는 각종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비용은 계약자 본인 부담임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2주택 이상을 소유한[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의 세대원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확인] 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사용검사(준공) 승인시 그밖의 공용면적은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이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 6항, 7항에 해당하는 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1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5%),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10%) 범위내에서 공급되며, 당사 견본주택에서 직접 접수 및 추첨을 통해 당첨대상자를 선정함.
1) 신청일시 및 장소

구분		일자	시간	장소
일반특별공급/ 3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	2011. 10. 10(월)	10:00 ~ 14:00	당사 견본주택
	당첨 공고		14:00	

구분	84.8130㎡	84.8770㎡	74.7911㎡	계
일반특별공급	15	1	8	24
3자녀특별공급	7	-	4	11
신혼부부특별공급	15	1	8	24

※ 특별공급의 추첨 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 19조 6항에 해당하는 3자녀특별공급, 제 19조 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특별공급 순으로 함.
※ 당첨자 발표 및 장소 : 2011년 10월 19일 수요일(당첨자 발표일),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 계약 체결일 :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일 내 2011년 10월 24일(월) ~ 10월 26일(수), 3일간, 당사 견본주택
※ 추첨결과에 대한 개별통보를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입주자 저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수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을 납입하였을 경우
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경우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단위: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 군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	250	200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600	400	300
전용면적 102㎡초과 135㎡이하	1,000	700	4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6조 제7조에 의해 85~102㎡ 민영주택을 청약할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85㎡이하의 민영주택 청약 가능

- 거주지역 제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청약가능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제1, 2순위로 청약이 불가
· 특별공급시 유의사항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처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 당첨자가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은 당첨분은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당첨자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며,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해양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오며, 접수마감시간 이후(14:00)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금융결제원, 국토해양부 등의 주택소유 전산검색을 통하여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2) 일반특별공급(85㎡ 이하 건설량의 10% 범위 내)

구분	84.8130㎡	84.8770㎡	74.7911㎡	계
일반특별공급	15	1	8	24

①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 9.30)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단체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중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자(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일반특별공급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총 24세대
- 대상 기준 및 청약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② 일반특별공급 구비서류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인정서만 인정함(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등 기타서류 불가)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아래해당자에 한함.) - 미혼 · 이혼 ·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1부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기재 1통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1통. - 청약자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최초입주자 모집공고 3개월 이내 발행분) 용도란은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3) 다자녀 특별공급(건설량의 5% 범위내)

구분	84.8130㎡	84.8770㎡	74.7911㎡	계
다자녀특별공급	7	-	4	11

①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1. 9. 30)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 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만 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 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기존에 특별공급 당첨사실이 있는자는 청약이 불가함.
· 입주자 선정 방법 :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계산)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정함. (단, 동호수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②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자녀수(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이상	10	· 영유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 (2)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의 순으로 공급함.

③ 다자녀 특별공급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청약통장 가입 해당은행에서 발급) ·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서 및 배점기준표(당사 견본주택 비치 및 각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및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정 받고자 하는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미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본인 확인 후 반환) · 인감증명서 1통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본인 및 배우자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제3자 대리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함.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 ·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4)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85㎡ 이하 건설량의 10% 범위내)

구분	84.8130㎡	84.8770㎡	74.7911㎡	계
신혼부부특별공급	15	1	8	24

① 신청 자격 및 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
- 자녀를 입양하신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처리되어 향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낙태관련진단서, 임신진단서 임신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됨.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20세 이상의 세대원으로 하되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금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지(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19조에 따라 혼인기간이 3년이내인자를 1순위로 하고, 3년초과인자를 2순위로 하며 순위내에도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자,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2010년부터는 '6인 이상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작성, 발표하지 않는 관계로 '6인이상 가구' 도 5인 이상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람.

▷ 2011년도 기준소득

구분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3,887,503원 이하	4,447,007원 이하	4,709,76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4,665,003원 이하	5,336,408원 이하	5,651,718원 이하

※ 기타 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② 입주자 선정방법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주택공급신청자 중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권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
3. 미성년인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한다.

③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확인서(견본주택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제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만 20세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혹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재직증명서 첨부)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접수장소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본인 및 배우자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제3자 대리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함.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5)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9. 30) 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 1순위자 중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이상 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제약을 받을 수있음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공통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배우자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85㎡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자 중 납입 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980.08.29일 이전 국민은행[(구)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05.22일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청약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12개월이 경과한 분 (전용 85㎡초과 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1순위청약 제한대상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 2주택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순위로 청약 접수 가능
	2순위	공통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는 가점제로 청약 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전주택형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
	3순위	전주택형	·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청약신청기간 및 장소

구분	거주구분	순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광주광역시	1순위	2011.10.11(화)	· 인터넷청약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제외한 은행 : www.apt2you.com · 시간 : 08:00~17:30	· 발표일시 : 2011. 10. 19(수) · 장 소 : 당사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 당첨자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셔야 하며 개별서면통지는 하지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2011.10.12(수)		
		3순위	2011.10.13(목)	· 인터넷청약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자산관리 → 부동산 → 청약서비스) - 시간 : 08:00~17:30	

※상기 일정표 중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접수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 되지 않고 17: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 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로 확인되는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 1,2순위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시간 : 09:00~16:0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3순위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apt2you 가능 · 중도금대출은행과 협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과거 다른 분양가상한제 주택당첨자로서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은 재당첨 제한 기한이 경과되어야만 1, 2, 3순위 자격으로 청약 가능함.(단, 2009. 04. 01~2012.03.31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재당첨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청약 가능함.)
-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자조회에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산택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청약적격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 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람.

■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②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단,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구분	내용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

▷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① 일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나목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다목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감점항목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산정기준"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한다.
②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 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확인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④ 감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됨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됨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④				

③ 감점 산정기준

구분	감점항목 기준	소유주택수	감점점수
①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 수 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을 적용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나, 주택소유에 대한 감점은 없음.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 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①~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은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가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가점점수에서 차감)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별표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함(※장기간 보유 특례)
- (현재,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으로"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 · 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할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현재, 무주택자)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봄(단.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신청 접수방법
· 특별공급(일반,3자녀) : 2011. 10. 10(월).(10:00 ~ 14:00)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 일반공급
①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② 1,2순위
- 1,2순위 :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됨.
-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단,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청약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분류 하여 청약 접수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 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됨.
③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 사항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85㎡이하 주택형의 경우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를 적용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를 통해 공급하며, 85㎡이상 주택형의 경우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제 적용 우선공급하고, 50%를 추첨제를 통해 공급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산정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모바일 청약서비스 안내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공통	- 청약통장 가입은행(3순위는광주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분으로서 ·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 1,2순위에 해당하는 분 · 3순위 : 광주은행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단,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3순위 신청자는 광주은행 인터넷뱅킹(www.kjbank.com) 또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자산관리 → 부동산 → 청약서비스)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청약신청 접수방법 참조).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장애우, 노약자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 (1,2 순위 : 청약 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광주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1,2 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 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 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상기 제 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 · 초본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1. 9. 30) 및 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거주지,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세대주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에 대해서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3순위 청약 신청금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방법 및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광주은행 인터넷뱅킹(www.kjbank.com) 또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자산관리 → 부동산 → 청약서비스)(인터넷 접수시 계좌에서 자동출금되므로 청약 신청전 계좌잔액 1백만원 유지)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환불장소		구비서류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11. 10. 20] 이후 평일 09:00~16:00 (토/일/공휴일은 제외)	청약 접수한 은행	본인	· 주택공급 신청접수증 및 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의 환불 시에 한함) · 청약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서류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에 추가 구비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위임장

※3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은행 계좌(제2금융권 계좌 제외)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신규로 은행 계좌(제2금융권 계좌 제외)를 개설하여야 함.
※ 단, 3순위 인터넷청약 및 지점계좌(청약자 본인명의 은행 계좌로 한함)로 이체신청하신 분은 당첨자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됨.
※ 3순위 당첨자의 청약 신청금은 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은행에서 환불 받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3순위 신청자의 신청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아니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결정함.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가점제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 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함) - 각 순위별, 지역별,주택형별로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 청약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 청약자에게 공급하며, 85㎡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제 청약자에게 우선공급하고 50%를 추첨제 청약자에게 공급함.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입주자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 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부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 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 제한없이 임의 분양함.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구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이용 기간		2011. 10. 19 ~ 2011. 10. 29(10일간)	
이용방법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당첨사실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1588-9999 (서비스번호 : 9 → 1 → 3)	☎1369 (서비스코드 : 5#)

※ 본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순번이 포함된 예비당첨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2011.10. 21.(금요일) 16:00 까지 분양사무소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 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정당당첨자중 부적격자로 통보받은자의 처리기간이 경과한 후 예비당첨자 배정 동 · 호수 및 추첨 등 공급방법을 추후 공지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및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정당당첨자	2011. 10. 24(월) ~ 2011. 10. 26(수), 3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062-365-7171
예비당첨자	별도안내 및 추후통보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자 일방에 의하여 계약은 취소됨.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5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120-107-349137	(주)광신주택	∗입금시 송금인은 반드시 동 · 호수 및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잔금 납부일에 상기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 계좌를 필히 확인 후 입금 하시기 바람.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공통 (정당당첨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모바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현장수납 불가)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및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계약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1통(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에 한함) -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계약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경우) - 계약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만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이혼자 및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기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처리일 기준, 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등 증명서류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9. 3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가점제 1순위 당첨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금융결제원에 재당첨 유무를 검색하고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해양부에 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은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신청 시 1순위 자격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되고 당첨자로 관리됨
· 부적격 당첨자 중 당사가 정한 기간 이내에 신청자격을 착오로 잘못 입력(기재)하였음을 소명한 경우 당사에서 판단하여 금융결제원에 당첨자 제외 요청을 할 수 있음.(단,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됨
· 선순위 청약 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3순위 및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재당첨금지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1,2순위당첨자)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모두 계약체결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되지 않음.
· 광주광역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주택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지정 계약 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없이 당사에서 임의 분양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배치구조, 세대간 틀어진 각도의 차이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함.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 · 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입주전에 입주자가 사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예정일 약1~2개월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임
·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품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방문임.

■ 입주예정일
· 2013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경 될 수 있으니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당사가 지지 않음)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 신한은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구분	확장위치	확장공사비	비고
84.8130㎡ A타입	거실, 침실1, 침실2, 주방일부	8,760,000	외부발코니 창호 제공
84.8770㎡ B타입	거실, 침실1, 침실2	7,620,000	외부발코니 창호 제공
74.7911㎡ C타입	거실, 침실1, 침실2, 주방일부	7,960,000	외부발코니 창호 제공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2005년12월2일 개정 시행)
· 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중 지정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으로 발코니확장에 제외되어 있음.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입주자의 부주의에 의한 하자로 판명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하며 계약자 임의의 시공은 불가함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호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단위세대 기본 마감재 수준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대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해양부의 {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 공급 품목
문	목재문(문짝,문틀,상부덧판,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경첩등), 디지털도어록	목재도어(공문틀 포함)의 가틀, 발코니PVC내부창호, 세대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바닥	강화마루,타일,걸레받이,현관바닥재,현관디딤판,발코니바닥타일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발코니 우수 선홈통
벽	벽지(초배지포함),벽체마감(아트월,타일),가변형벽체	석고보드(해당부위),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시멘트 몰탈, 발코니 벽 도장
천장	천장지(초배지포함),등박스(우물천장),반자돌림(몰딩포함)	천장틀위 석고보드, 발코니천장도장
조명기구	부착형 · 거치형 조명등기구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욕실	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욕조틀 등),수전류,악세사리, 천장재(천장틀포함),샤워부스,욕실장,거울,욕실휀,바닥및벽타일, 욕실폰,비데	조적,방수,미장,전기배관/배선,설비배관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사리 포함),벽타일,수전류(수전),주방가전 일체(가스오븐레인지, 음식물탈수기, 렌지후드), 주방TV폰	설비배관
일반가구 및 기타	가구류일체(신발장,드레스룸장,파우더장,각종선반,주방상하부장등), 수전류(발코니,세탁실)	

■ 마이너스옵션 금액

구분	84.8130㎡	84.8770㎡	74.7911㎡
마이너스옵션금액	20,518,379	20,534,400	18,160,817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기본형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자재수급 사정 · 품질관리 · 시공관리 ·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 및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시설은 적법한 감리절차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 (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된 자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변경전보다 작은 주택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3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 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정산 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있지 않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 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등 마감자재의 색상,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이 경우 동급, 동질 이상으로 시공함.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본 공고에서 정한 금액으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종류, 형태,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세대내 보조주방과 발코니 수전 및 드레인 위치는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단지내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함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의 경우, 색채심의 및 법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 사업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승인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1층세대는 보행동선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는 별도의 구획이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사업승인 조건상의 지역정압기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단지내 도시가스 지역정압실이 설치될 수 있음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 쓰레기 분리수거장, 상가 실외기, 어린이놀이터, D/A, TOP LIGHT, 관리동, 문주, 방음벽 등의 설치로 일부 세대는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계약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입주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에 공고할 예정임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내 시설물의 변경,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환경권, 도로소음발생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단지내 주민운동시설등은 입주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세대별로 외부창호 형태 및 이에 따른 개구부 크기가 상이하므로 계약 세대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오며, 계약 및 입주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급/배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점검구의 제품사양과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시공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 설치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인허가 및 본시공 여건, 성능/기능/입면 개선, 풍동 시험결과 등에 따라 프레임 및 유리두께, 색상, 크기, 개구부 위치, 규격, 재질, 형태, 면분할 수 등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욕실에 설치되는 세면대, 좌변기, 욕조, 수전 등의 제품은 견본주택에 설치 또는 분양 자료에 표현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세대내 보일러 설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함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건물외관 및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등은 해당 관청과 협의(자문) 과정 및 디자인 개선작업에 따라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대지의 별도 구획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세대별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건폐율, 용적율,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은 개발 진행 중 및 개발 예정으로 분양시점에 표현된 조감도, 배치도, 모형 등의 주변 사항은 다를 수 있음
· 단지 내 기타공용시설(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 면적은 각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전체 세대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으며, 입주 후 공용부분 관리비는 세대면적에 따라 균등부과 될 수 있음
·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각 타입별 서비스면적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연자재(무늬목, 천연석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디자인에 사용된 천연석 및 타일 등의 표면에 크랙과 같이 보이는 Grain은 자재 자체의 특성을 Natural하게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으로 자재의 하자가 아님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람.(본 공사시 대리석 및 타일 코너부분은 디테일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천정,벽,바닥)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으니, 계약자 임의 가구변경에 따른 마감처리 등을 시공사나 시행사에 요청할 수 없음.
· 일부 세대는 옹벽 등의 주변 환경 및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함.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붕의 재료, 형태 및 구조와 난간의 형태 및 설치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동선 및 기능의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차량 및 보행자출입구는 단지주변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시공시 일부 레벨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의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및 외관이 변경 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을수 있음.
·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테라스는 우수배관 등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작업자의 방문이 발생될 수 있으며 관리 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의 테라스 바닥은 우수 처리 구배를 감안하여 위치에 따라 마감두께가 차이가 있고 견본주택 시공과 상이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 경계벽 및 옥상의 난간은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일부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와 테라스 사이 경계턱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는 추가로 확장 시공 될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 시 발생되는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내 조감도, 세대평면도, 모형 등의 각종 홍보물의 내용과 제반 설계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승인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함.
·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 표현의 오류 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유인물 내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 후 변경될 수 있음.
· 외국인(외국법인포함)이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할 경우.
- 국내거주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 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법인을 국내에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신청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해야 함

■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 및 기관

구분	확장위치	감정기관	감정 금액 (㎡/원)
공동주택(아파트부지)	12,362㎡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1,070,000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1,050,000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비고
회사명	(주)목양엔지니어링	(주)금강엔지니어링	(주)목양엔지니어링	(주)목양엔지니어링	
감리금액	446,899,200	33,000,000	3,300,000	15,400,000	부가세포함

■ 연대보증사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일 포함)까지	36,362,098,500	제 05612011-101-0003700 호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1조제4호)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3조)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새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 (주)광신주택 사업자번호 410-81-65927
■ **시 공 사** : (주)광신종합건설, 사업자번호 410-81-99790

견본주택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62-18번지 일원 광신프로그레스 주택전시관
연락처 : TEL. 062-673-7173 FAX. 062-671-7173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